

# 행정자치부 시정요구

제 목 중과세 미적용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누락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삼척시, 고성군, 양구군, 철원군, 횡성군

내 용

강원도 삼척시 등 5개 시·군에서는 특정부동산<sup>69)</sup>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4층이상 10층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하고, 제2호의2에서는 11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중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47조제2항에서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법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재산세 부과 시 4층 이상의 건축물을 조사하여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하여야 한다.

그러나, 삼척시, 고성군, 양구군, 철원군, 횡성군에서는 4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아래 [표]와 같이 26건 / 12,897,730원을 부과누락 함으로써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69)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2호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

[표] 중과세율 미적용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누락 현황 (단위 : 원)

구분	합 계	삼척시	고성군	양구군	철원군	횡성군
건 수	26	1	11	2	4	8
금 액	12,897,730	706,940	8,075,410	2,158,370	583,360	1,373,650

※ 자료 : 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삼척시장, 고성군수, 양구군수, 철원군수, 횡성군수는**

중과세율 미적용으로 부과누락한 지역자원시설세 26건 / 12,897,730원에 대하여 부과·징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